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389호 2018. 10. 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4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8-134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 560-4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단위 : 원/m²)

지 목	지목별 평균치	지 목	지목별 평균치
진	359,768	하 천	217,108
담	201,999	제 방	151,892
과 수 원	237,890	구 거	147,483
목 장 용 지	458,224	유 지	176,077
임 야	103,673	수 도 용 지	499,011
광 천 지	-	공 원	306,036
염 전	313,965	체 육 용 지	206,748
대	1,217,044	유 원 지	811,009
공 장 용 지	890,737	종 교 용 지	1,150,052
학 교 용 지	1,132,836	사 적 지	-
도 로	339,528	묘 지	133,737
철 도 용 지	137,372	잡 종 지	582,593
주 유 소	1,279,968	창 고	652,913
주 차 장	1,214,519	양 어 장	145,60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달로 116 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10.0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0-0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9-7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16 (석남동)	20181001	옛 건지촌 뒷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331-9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 9-2 (삼곡동)	20181001	연희전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바닷가에 묻혀있어 용두산이라고 함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6-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14 (가좌동)	20181001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95-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83번길 28 (가좌동)	20181001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0-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4번길 51 (경서동)	20181001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36, 434-535	인천광역시 서구 두루물로78번길 32 (오류동)	20181001	두루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8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46번길 3-1 (오류동)	2018100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44 (당하동)	2018100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17, 958-2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42 (당하동)	2018100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18, 958-2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46 (당하동)	2018100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2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37 (당하동)	2018100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31, 958-3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40 (당하동)	2018100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32, 958-3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38 (당하동)	2018100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8-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38번길 12 (청라동)	20181001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7번길 91 (원창동)	20181001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4-16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21 (가정동)	20180924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4-17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19 (가정동)	20181001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8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30 (원창동)	20181001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62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43 (청라동)	20181001	청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8-09-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원당동 832-4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8-4(원당동)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74 (원당동)	소유자신청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선정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의 2호를 ‘면제’에서 ‘100분의 80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 및 경기 중 중복 단어 ‘행사’ 삭제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의 2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삭제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2항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로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2항을 3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3항을 4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4항을 5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5항을 6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7항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선정 중 법률위임 없는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의 2호를 ‘면제’에서 ‘100분의 80 감면’으로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 및 경기 중 중복 단어 ‘행사’ 삭제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의 2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삭제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2항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로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2항을 3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3항을 4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4항을 5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기존의 5항을 6항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7항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부수된”을 “떨린”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적합하거”를 “적합하지 않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 구민에게 지체없”을 “분명하게 밝혀 구민에게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행사 및”을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고”를 “되돌려주고”로, “반환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센터 시설”이란 체육시설과 그에 <u>부수된</u>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 ----- <u>달린</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공익상 <u>부적합하거나</u>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p>	<p>제6조(사용허가 제한)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적합하지 않거</u>----- -----</p>
<p>제7조(시설개방 및 대관)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u> 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시설개방 및 대관) ① ----- ----- <u>없으면</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개방 및 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및 대관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기간</p>	<p>제8조(개방 및 대관 제한) ----- ----- -----</p>

등을 명시하여 구민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1. 시설의 개·보수 등 위험이 예상될 때
- 2. (생략)

제9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4. (생략)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 1. (생략)
- 2. 체육관 대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

-- 분명하게 밝혀 구민에게 지체 없-----.

- 1. ----- 개수·보수 -----
- 2.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제한) -----

-----.

- 1. (현행과 같음)
- 2. ----- 지닌 -----

3.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

-----.

- 1. (현행과 같음)
- 2. ----- 없으면 -----

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 및 경기
-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 설>

② ~ ⑤ (생략)

<신 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 5. (생략)
- 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1. -----
----- 및 -----
- <삭 제>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않는다.

- 1. ~ 5. (현행과 같음)
- ② -----

<p>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u>반환하 고</u>,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 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u>반환한다</u>.</p>	<p>----- ----- <u>되돌려주 고</u>----- ----- ----- <u>되돌려준다</u>.</p>
<p>제18조(강사 배치) ① (생 략) ③ (생 략)</p>	<p>제18조(강사 배치) ① (현행과 같 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 하지 <u>아니한</u>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용 한다.</p>	<p>제21조(준용규정) ----- -- <u>않은</u> ----- ----- ----- -----.</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통합으로 “구 체육회”로 변경.

2. 주요내용

- ‘구 생활체육협의회’ 문구를 ‘구 체육회’ 문구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하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 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u>관하</u> <u>여</u> <u>필요</u>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필요</u> ----- ----- -----.
제4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u> <u>요하거나</u>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 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긴급하</u> <u>거</u> ----- -----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게이 트볼장의 사용은 신청순에 의한 다. 다만 시설부족으로 경합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 라 허가한다. 1. · 2. (생 략) 3. 구 <u>생활체육협의회</u> 4. (생 략)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체육회</u> 4.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게이트볼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게이트볼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3. (생략)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8조(시설의 개방) ① -----

 ----- 없으면 -----
 -----.

② -----

세워 -----
 -.

제9조(개방제한) -----

 -.

1. ----- 개수·보수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사람에게-----
 -----.

1. (현행과 같음)
2. -----
 ----- 지
닌 -----

<p>3. 경기장 질서를 <u>문란하게 하</u> <u>는 사람</u></p> <p>4. (생 략)</p> <p>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 용자가 게이트볼장을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는 <u>사전에</u>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 ③ 삭 제</p>	<p>3. ----- <u>어지럽히는</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 ----- - <u>미리</u> ----- ----- -----.</p>
----------------------------------------------------------------------------------------------------------------------------------------------------------------------------------------------------------------------------	---------------------------------------------------------------------------------------------------------------------------------------------------------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3.2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07.01)에 따라, 월 10,000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세대가 없어지고 정액의 최저보험료 월 14,060원 [13,100원(최저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7.38%)] 납부로 변경됨.
- 이에 따라, 現 조례상 지원기준인 월 10,000원 미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최저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각 지원대상자 별 자격 기준이 상이하므로 저소득층의 개념 재정립 및 각 대상자별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로 변경하여 각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로 변경하여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최저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조정함. (안 제3조제1항)
- 지원대상자별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조제1항 각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노인복지과, 전화: 032-560-4974, 팩스: 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07.01)에 따라, 월 10,000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세대가 없어지고 정액의 최저보험료 월 14,060원 [13,100원(최저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7.38%)] 납부로 변경됨.
- 이에 따라, 現 조례상 지원기준인 월 10,000원 미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최저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각 지원대상자 별 자격 기준이 상이하므로 저소득층의 개념 재정립 및 각 대상자별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여 각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여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최저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조정함. (안 제3조제1항)
- 지원대상자별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각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별지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를 “다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
대 및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
를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제3조제1항제3호 중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생략)

② (생략)

제4조(지원시기) ① (생략)

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알려야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지원기준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월 14,060원** [13,100원(최저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7.38%)]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비용 추가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2018년 대비 2019년 지원인원 및 금액 급증
- 2019년부터는 매년 노인인구,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연평균 약 10% 증가 추계
- 매년 최저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연평균 약 11.1% 지원기준금액 증가 추계
- ※ 1단계 2018년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4,060원) →
2단계 2022년 17,46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40원) 증가 예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지원인원	688	1,212	1,333	1,466	1,612	6,311
금 액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합 계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자체재원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국비보조	-	-	-	-	-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자채수입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국고보조금	-	-	-	-	-		
세 출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사 업 비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재원 조달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의존원 채원	소 계						
	보조 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 세						
	조정교부						
자채 수입	소 계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지방세	47,400	107,500	119,432	132,689	147,417	554,438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4. 부대의견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소액보험료(10,000원 미만) 대상자가 없어지고, 2018년기준 정액의 최저보험료 월 14,060원 [13,100원(최저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7.38%)] 이상 납부로 변경됨. 이에 따라, 향후 노인인구, 등록장애인세대, 법정한부모 가족 세대 증가 및 매년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

작성자 :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임춘민 (인)

관 계 법 령 발 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48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69조(보험료)

-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5.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5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